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4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안 제1조~제2조)
- 나.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안 제3조~제5조)
- 다. 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 라. 의견 청취 등(안 제7조)
- 마. 수당 및 예산 지원(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예산조치: 따로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0월

2)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3) 규제사전심사: 기획예산과

4) 성별영향평가: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제안
2.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제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20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복지, 도시, 안전,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등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분과위원회, 수시 자문으로 운영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수시 자문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위촉장 제작, 회의 개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강서구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담당: 행정7급 김현봉)
연락처	(02)2600-602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2-36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2. 10.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조례 제정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안 제1조~제2조)
- 나.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안 제3조~제5조)
- 다. 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 라. 의견 청취 등(안 제7조)
- 마. 수당 및 예산 지원(안 제8조)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38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김현봉	전화번호 02-2600-602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0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p> <p>행정지원과장 귀하</p>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